

# [일반공급] 서류제출안내



※ 제출하시는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0.31)**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  
 ※ 아래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구분	제출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필수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필수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필수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필수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필수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 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필수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등 상세증명으로 전부 공개 발급
	필수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필수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※ 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개명 시 개명전/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모두 제출
	해당자 (추가)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해당자 (추가)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
해당자 (추가)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※ [공통①] <b>해외근무자(단신부임)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</b>	
해당자 (추가)	전세피해자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, 낙찰주택이 전용면적 85㎡이하이면서, 주택공시가격 1억5천만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※ [공통②] <b>전세피해자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</b>	
가점제 당첨자	해당자 (추가)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, "상세"로 발급
	해당자 (추가)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미확인되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분리세대원 경우
	해당자 (추가)	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	배우자	•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,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[ 청약축 ]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신청주택명 선택 [ 청약통장 가입은행 ] 청구 방법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
	해당자 (추가)	당첨사실 확인서	배우자	•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, 아래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[ 청약축 ]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
	해당자 (추가)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직계존속 및 직계비속	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 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1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해당자 (추가)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속 및 직계비속	• 직계 존-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-입주자모집공고일,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"Y"로 설정 발급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※ 직계존속 : 요양시설 및 해외 체류 중(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)인 경우에 부양가족 제외 ※ 만30세 미만 직계비속 :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만30세 이상 직계비속 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
	해당자 (추가)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부적격 당첨 통보자	해당자 (추가)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 화신,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해당자 (추가)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기관	•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대리인 제출시	필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
	필수	위임장	본인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본주택에 비치
	필수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•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